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첫 번째 토론회

그들의 얼굴에 파이를 던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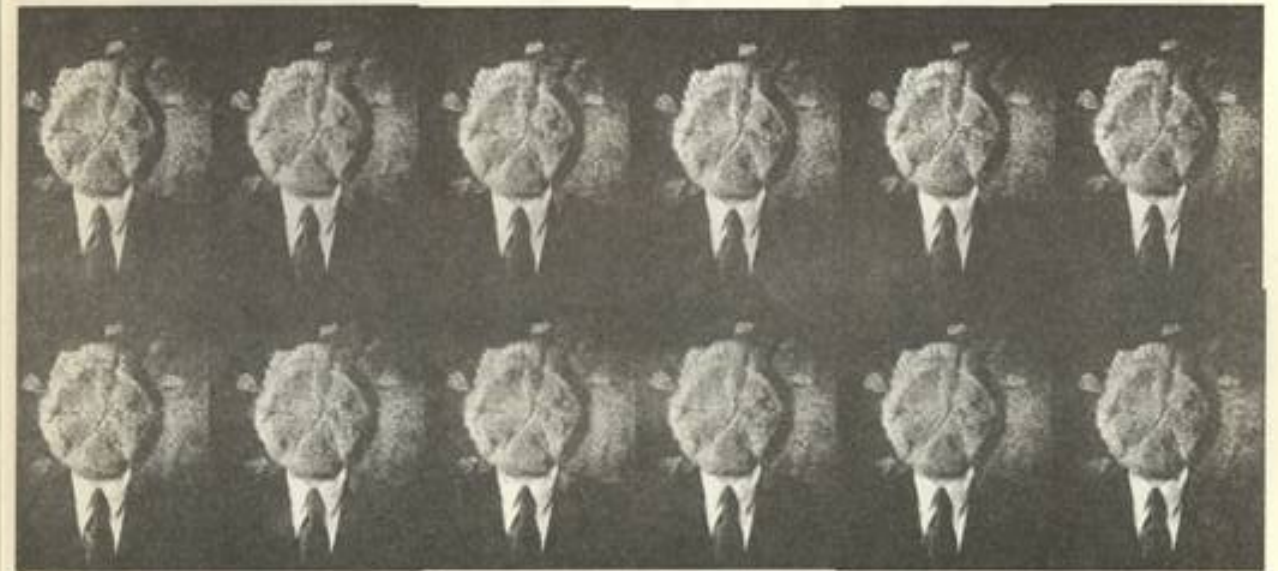
일시 : 2002년 8월 20일

장소 :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지하) 소극장

뿌리부터 싹둑!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첫 번째 토론회

그들의 얼굴에 파이를 던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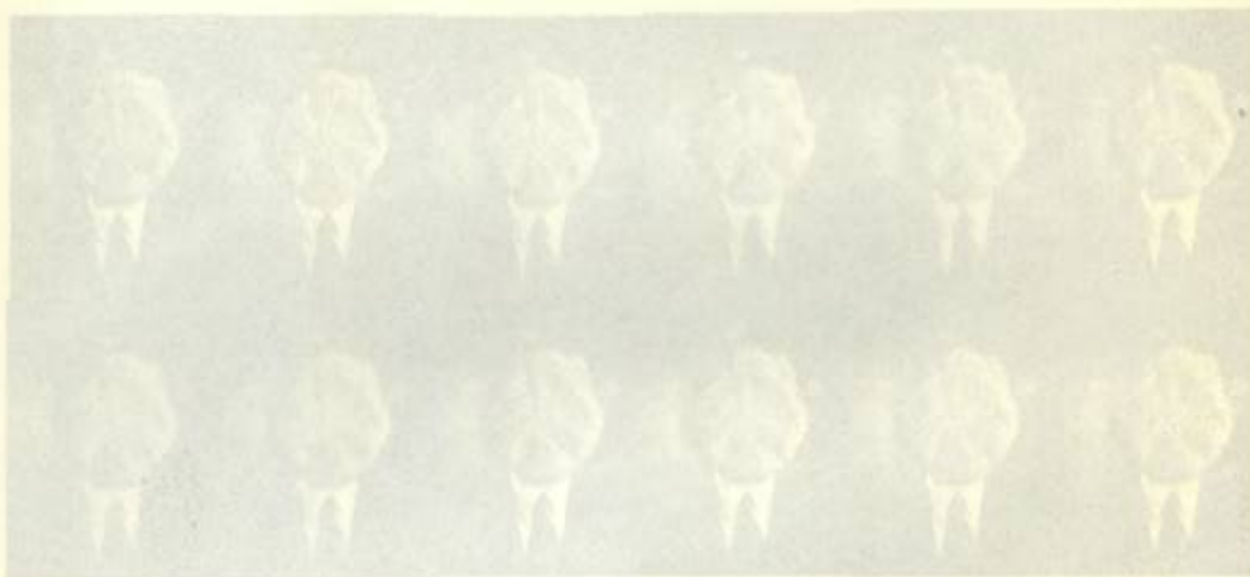
일시 : 2002년 8월 20일

장소 :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지하) 소극장

뿌리부터 싹둑!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이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부터 클리어 이동을 이룰다



2005년 8월 15일

부동산 (주)에 대한 이해 ; 소개

이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 것이다

■ 여는글

Cut it Out !

- 지현 -

가치가 뺏어 나와
나의 허리 휘어지고

가치가 뺏어나와
내 젖가슴을 얻고

나의 몸부림 보지 않고
나의 비명 듣지 않고

나의 분노 느끼지 않고
나의 증오 외면하고

날어 선 도끼가 되어
날어 선 가위가 되어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Cut it Out !



여는글 - *Cut it OUT!* / Song_지현

■ 실태와 심각성

한국사회의 교수 성
폭력의 현주소!



3...교수 성폭력 사건의 실태와 심각성 / 글_강박
13...피해의 심각성 / 글_달리·나비

■ 해결의 어려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치구니 없는 장애물
들



21...현 학칙의 문제점 / 글_가람·바람
24...학교와 교수사회의 대응논리 / 글_paper
26...행정기관의 비 전문성 / 글_무사

■ 법적으로는...

감각이 멀기도 하
다 TT



31...성폭력에 대한 법적 해결
- 그 가능성과 어려움 / 글_동전

■ 대안....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한
다



42...학내 해결을 위한 반성폭력 학칙
/ 글_강박
45...제대로 된 법적 해결을 위한 현행법
의 개선 / 글_달리

■ 발제1

교수 성폭력 사건의 실태와 심각성



【 교수성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이하 교성뿌연)'에서는 그 동안 언론이나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알려진 교수 성폭력 사건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¹⁾

교수(강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 1)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2)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강의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4)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와 권위

- 1) 사례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일간지에 실린 교수 성폭력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당시 사건 해결에 관여했던 단위에 추가로 정보를 문의하여 정리하였다.

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학생의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이라는 일반의 시각으로 인해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쉬워진다. 또한 공적인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술자리나 '논문을 봐주겠다'거나 '상담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 교수가 접근할 때 피해 학생들은 이를 교수에 대한 신뢰와 존경 속에서 밀고 따라가게 되기 쉬워짐으로써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학생의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이라는 일반의 시각으로 인해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쉬워진다

이 글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만으로 사례를 정리하였고, 수집한 사례를 통해본 실태를 중심으로 교수 성폭력 사건의 비가시성과 해결의 어려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교수 성폭력 사건의 비가시성

교성부연에서 수집한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가해를 한 경우가 8건이었으며, 한 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해를 한 경우도 많았다. 1:1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17건 중 피해자가 대학원생인 경우가 7건이었는데, 이는 다수의 교수 성폭력이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만남이 잦은 대학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특수한 권력 관계로 알미암아 대학원생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수집한 사례를 사건 발생 연도별로 분석해보면²⁾ 1999년 이후로 5건 정도의 사건이 드

2) 몇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신고 등을 통해서 사건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례가 가장 많은 2000년의 경우도 알려진 사건은 채 10건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수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만 보아도 대학 내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0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대학 내 성폭력 상담건수는 가해자가 교수나 강사인 경우가 32건이었고, 2001년의 경우 교수·강사에 의한 것이 22건이었다. 상담소 한 곳에서 1년에 2-30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 상담되고 있는데 알려진 사건은 채 10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대학 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신설되면서 학내 상담이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교수 성폭력 사건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위계질서와 대학 내 제도의 미비함

그 동안 교수 성폭력의 문제는 교수와 학생간의 분명한 위계질서와 대학사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은폐되어 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대학은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반성폭력 학칙도, 처리기구도, 제도적인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 곳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통례였다. 교수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교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대학원생들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 지도 교수가 가진 권력은 막강한 것이어서, 성폭력을 당해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도교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은 그만 쌓아왔던 학업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일이며, 따라서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고 그 동안의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경우였다.

학생에 대한 교수의 절대적인 영향력

또한 교수 성폭력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학업을 통하여 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학위,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은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주된 이유이자 은폐 요인이다.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 유인해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성부연에서 수집한 사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가해 교수가 전공과목의 교수이거나 지도교수 등 피해자에게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학점이 모자라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주겠다거나, 대학원 진학 문제 등 피해학생이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설령 직접적인 협박이나 유인이 따르지 않더라도, 거부사를 표명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제기 시 받게되는 피해

이러한 피해학우의 상황은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의 피해자들의 경우 자퇴나 학위 포기 등 교육상의 불이익을 받게되고 신뢰하던 교수에 의한 피해로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게된다. 여전히 대학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학생은 약자이며, 가해자인 교수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하기에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피해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난한 싸움을 시작할 각오를 해야한다. 서강대 K교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였으며, 피해자는 박사과정 3학기의 학생이었다.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박사 논문을 포기해야 했고, 공부를 중단하고 이루어질 긴 싸움을 각오해야 했으며,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했다. 현재의 제도 역시 성폭력 교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욱더 문제제기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대학사회 내에서 가해교수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교수사회 전반과 대한 피해학우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성폭력이라는 문제의 심각성과 비판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학위입니다. 거의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학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피해학우의 목소리는 너무나切박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인 학생이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교수가 처벌을 받았거나, 사건을 공론화를 하고 자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교수 성폭력 해결의 어려움

성폭력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가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피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하던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었던 일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학업의 결과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그 긴 시간을 사건 해결을 위해서 보내야 하고, 그 시간동안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었을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이후로 반복,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학교와 교육부, 법정에서는 가해교수에게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 신뢰하던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었던 일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 성폭력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 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사건의 경우 1992년부터 2000년에 걸쳐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그 간의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신교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반면, 가해자는 지금도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다. 수년간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창원대의 송교수의 경우 교육부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역시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한 강원대의 김교수에게도 교육부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동국대 김교수 사건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대학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린 교수를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 정직 1개우러로 징계를 축소하고 복직 판정을 내렸다.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서강대 K교수 사건처럼, 학내에서 자치적으로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자체적 해결을 시도하고, 제도적으로 학내 징계위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하거나, 여성부에 제소하고, 다시 형사나 민사 사건으로 고소하여 재판을 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수집한 사례들을 보면 학내에서 가해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 여특위나 여성부에 제소하여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사례, 학내 징계위나 교육부 징계위에서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나 민사로 법적 대응을 하여 유죄가 인정되고 학교에서 직위해제나 해임이 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각각의 대응 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내 여론화를 통한 자체적 해결을 시도했고, 여성부(혹은 이전의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성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3건이었다. 학내에서 가해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건은 전남대 안교수를 해임한 건을 처음으로 Y대 이교수, 경북대 이교수, 동국대 김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서강대 K교수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98년 8월 강원대 김교수에게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자체조사 후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처음으로, 창원대 송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동국대 김교수에게 재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가해교수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한 경우도 14건이었는데,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건이 법정 싸움으로 가게되는 경우에 언론에 알려지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학교나 교육부를 통해 교수를 징계하는 규정은 정직 1개월에서 3개월과 해임, 파면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학교나 교육부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단위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피해자의 학습권보다 교수의 교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가해교수에게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생활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해교수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없도록 해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가해교수에게는 정직처분만을 내리고, 오히려 교수의 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학생과 지지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해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가해교수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정직 1개월에서 3개월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년간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교수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다시 학교에서 강단에선 가해자를 피해자가 만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직 처분이 중징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해교수들에게 거의 타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학생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치유는커녕, 반복되는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학내에서나 교육부에서 교수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 중 성폭력을 징계하는 규정은 '품위손상'이라는 애매한 규정뿐인데, 성폭력을 징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교수로서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지난한 사건 해결 과정

우리 사회에서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신교수 사건의 경우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한 싸움을 해야 했으며, 피해자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가해교수를 처벌

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고 실제로 해임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의 생활권 및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경찰, 검찰 등의 외부조사기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01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행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원은 1999년 21명(해임 7명 포함)에서 2000년에는 33명(해임 7명 포함)으로 57% 늘어났고 33명 중 대학이 8명이었다고 한다. 수많은 교수 성폭력 사건 중 교육부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 교수가 1년에 겨우 8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서강대 K교수 사건, 동국대 김교수 사건 등이 그러하고, 사례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 법정에서 가해교수의 고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침해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이며, 남성 중심적인 수사기관과 법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와 그 지원자들에게 2중, 3중의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다 ♂

그러나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건 해결과정도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피해에 대해서 끊임 없이 반복해서 진술을 해야하고, 힘든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가해교수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하며,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한다. 수집한 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 중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한 해결과정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또한 가해교수들은 학교나 교육부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자들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여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서울대 신교수, 구교수, 중앙대 국교수, K대 금교수, 동국대 김교수, 서울산업대 김교수 등 많은 가해교수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자들을 억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하였다. 교성부연에서 수집한 사례 중 법적 대응을 한 14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8건의 사건에서 가해교수들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들을 억으로 고소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에 대해 반복해서 진술해야하고, 가해교수를 대면해야 하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 시간 동안 하고자 계획했던 혹은 할 수 있었을 수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법정에서 가해교수의 고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침해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이며, 남성 중심적인 수사기관과 법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와 그 지원자들에게 2중, 3중의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다.

<교수 성폭력 사례3>

가해자	사건	학내	법정	최종	불이익&억고소	현재 진행 ?
1. 신교수(60) 서울대	성추행 대학원생 (1992년 6월)	93.8대자보부착 학생들진상조사위 결성	93.10손배소송 94.1 1심3000만 95.7 2심패소 99 3심환송 99.6 일부승소500만	재직중	93.6조교재임용 탈락 93.9명예훼손고 소(기소유예 판 결)	-
2. 구교수(55) 서울대	성추행 대학원생 (1994년4월)	성폭력문제해결과 근본적 대책마련 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99.6 99-2학기약 대전공수업을 말 음->수업거부	97.학원내 성희롱시비와 관련,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수가 유리판결을 받 은 것은 이번이 처음 (교수직에서직위해제)	해임 (성추행 때문은 아님)	피해자-명예훼손고소 ->무고 구속기 소됨(97.8 집유2 년징역1년)	-
3. 송교수(50) K대	강간+성추 행 학부생 (1996년 12월)		97. 강간고소-무혐의 99손배소송-항소2000만	해임		-
4. 국교수(54) 중앙대 예 대	성추행(업 무상위력)+ 무고 남학생3인 (95.3~97.3)		98.2 고소&기자회견 99년 기소 1심 징역3년 2심 징역1년 02.1 3심일부무죄회송		98.명훼손무고 맞고소 ○	-
5. 안교수(54) 부산동의대 미대	성추행 학부생다수 (1997년 4월)	학생들사피요구	학교진상위원회 (성추행 인정X, 품위 손상)			-
6. 안교수 전남대 약 대	성추행 여학생 (1997년 11월)	98.3 학내징계위 해임요구 국내 대학에서 교수 가 제자에 대한 성 추행과 관련, 해임 되기는 이번이 처음		해임		-

3)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 단체에 사건에 관해서 문의를 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정리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도 있었음을 밝힌다. 학교나 법정에서 조사 후 어떤 처분을 내렸고 대응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해당란을 비워두었다.

7. 김교수(48) 강원대	성추행 여학생다수 4년간 15명 (1995~8년)	정계이후, 강원대 성희롱사건의 울바 른 해결을 위한 비 상대책위원회 교수 퇴진요구	98.8 교육부 징계위원 회 정적3월(1st)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성희롱 의혹을 사 고 있는 교수에 대해 자체조사후 교육부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			
8. 서교수(43) 신성대	성추행,강간 10여차례 학부생 1998년 4 월~1999년1 월		99.7 고소		교수부인이 피해자 간통 맞고소	-
9. 송교수(52) 창원대	위력성추행 여학생3명 (1999년 3월)	교육부3개월정적.(2nd)	1심 징역8월선고유예 00.11 2심 그대로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 우에 그 선고유예기 간중에 있는 자)	해임(국 가공무 원법33 조1항5)		-
10. B교수(51) 대전모대학	언어성폭력 여학생다수 (1999년)	여성특별위원회에 사건이 접수 2000년초 정적처분				-
11. 임교수(43) 경원대 미 대	강간 여학생 (1999년 7 월)		00.7 구속기소			-
12. 정교수(58) 지방사립 Y 대 음대	성추행수차 레 여학생 (1999년)	99.12 언론보도 학내징계위 해임 교육부재심위 해 임정당	행정소송 00.12 해임정당판결	해임		-
13. 이교수(44) 공주교대	성추행 여학생4명 (2000년 3 월)	총학생회에신고 자진사피요구와수 업거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가 진상조사-권 고조치	재직중		-

14. 황교수(50) 서울대	언어성폭력 여학생다수 (2000년 4월)	학내 사전 공개 & 공개 사과요구				-
15. 장교수(45) 대전대	성추행 여학생 (2000년 5월)		법정구속 00.10 1심징역10월집 행유예2년 01.2 2심500만원			-
16. 김교수 연세대	성추행 대학원생 (2000년 5월)	학내사퇴요구(수 업은 말지않으나 교수직위유지)	2001. 형사고소			?
17. 금교수(42) 경산 K대	강간치상 조교 (2000년 5월)	학내학과장지위해 제	01. 징역2년집유3년	해임	00.5 무고맞고 소(금교수)	○
18. 이교수(49) 경북대	강제추행 대학원생 (2000년 8월)	동료교수성명발표 01.2 학내교원징 계위 해임	00.8법정구속(해임) 고소취하(복직) 01.2 징계위 해임 02.2행정소송1심(복직 학교에서항소中		대구여전대표- 사이비 명예훼손 고소 1심.벌금200만 항소中	○
19. L교수 단국대	성추행 일본인대학 생 (2000년 7월)		합의	사퇴		-
20. 김교수 동국대	성추행 여학생 (2000년 7월)	학내징계위 해임 교육부재심위 정 직1월(복직)	01.형사고소-무혐의 02.민사소송 제기		피해자-무고와 명예훼손고소 現학과장-명예 훼손과업무방 해고소	○
21. 허교수(63) 계명대	성추행 어학연수여 학생다수 (2001년 7월)	학내진상조사위무 렵->자진사퇴		01.7 사퇴		-

22. K교수 서강대	성추행 대학원생 (2001년 10월)	K교수 성폭력 사 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구 립. 학내징계위정적3 월	02.2 형사 기소 02.8 1심 벌금700만 02. 민사소송제기			○
23. L교수 경희대	성추행 대학원생 (2001년)					
24. 성교수 경기도모대 학 음대	강간상해레 슨제자 (2001년 12월)		01.12 형사기소			?
25. 김교수(50) 서울산업대	언어성폭력 여학생 (2002년 3월)	학생들 교수파면 요구부정 5월 여성부에신고			학생10인 징계 피해자와과대표 2인-명예훼손고 소	○

■ 발제2

【 피해의 심각성 】

STOP!

▶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은 물리적, 언어적, 시각적 방법 등의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모든 성폭력은 상대를 성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대, 강요, 힘이 사용된다는 기본적인 공통성이 있으며, 강간/추행/성근육(성희롱)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형태로 구성된다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총합이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행동들의 연속적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은 권력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위계의 차이에 기반 하여 발생하는 범죄이다. 우리 사회에서 받지 못하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곧 폭력으로 이어진다 것은 그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며, 그것은 곧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라는 지위가 지니는, 또 다른 차원의 막강한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교수 성폭력이 바로 그러한 예이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여타의 성폭력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며, 그 정도도 심각하다. 본론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자체로 받는 피해와 사건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1. 사건 자체로 인한 피해

▷ 정신적 피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섹슈얼리티는 사회 구성론적 관점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성을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들 내에서 모든 사회 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또한 그것은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성적인 욕망,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실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의미한다. 성폭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섹슈얼리티에 손상을 가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므로, 섹슈얼리티에 손상을 가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정체성의 혼란 및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단순히 여성의(또는 일부 남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체성의 뿌리까지 뒤흔들 수 있는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survivor) 동안 병치레까지 하는가 성폭력이 발생한 후, 자신의 몸을 부정하고, 무기력해지며, 이전의 자신과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또한 평소에 신뢰하던 교수가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안감, 공포, 대인 기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 상실감, 허탈감으로 인해 피해자가 한동안 병치레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심지어는 공포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성폭력은 단순히 여성의(또는 일부 남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체성의 뿌리까지 뒤흔들 수 있는 극악한 범죄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 상실감, 허탈감으로 인해 피해자가 한동안 병치레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심지어는 공포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또한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자신감이 결여되고, 가해교수의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는 곧 학습권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다시 말해, 사건자체로 인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악화되기 일쑤이다.

..성폭력 역시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범죄이며, 수위(?)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구체적인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육체적 피해

수잔 케페스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에너지의 근원인 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상태이고, 마음과 정신은 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존하고 그것을 반영한다고 한다. 또한 몸을 원동력, 감정, 지능, 본능, 성적 기능을 공급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근원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 에너지가 자아 인식과 자기 수용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이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즉, 몸/자아가 교섭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자기 성찰적인 지식을 이끌어내는 데는 자아 인식과 자기수용이 필요한 것이다.

케페스 박사의 몸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은 인권의 토대를 신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며, 신체에 가해지는 직·간접적 폭력, 자아를 상실하게 하는 억압은, 피억압자를 파편화하고, 그들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피해는 서로 성폭력 역시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범죄이며,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수위(?)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자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구체적인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되어 그 피해가 가중되고 중첩되며, 피해자를 자신으로부터 더욱 분리시키고 옥죄고 웁아맨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신체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이 되거나 이미 가해진 피해를 가중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수 없는 것이며 서로 연결되어 그 피해가 가중되고 중첩되며, 피해자를 자신으로부터 더욱 분리시키고 옥죄고 웁아맨다.

2.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받는 피해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성폭력 사건 그 자체가 주는 고통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그 유형이나 심각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연속선의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삶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교수성폭력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 그 자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의 바로 곁에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겪게 되는 직·간접적인 삶의 피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한 침해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 생활권의 침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교수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받는 권리의 침해는 생활권의 침해다. 수많은 사례들에서 드러났듯이,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건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요인에도 마주치는 것을 꺼린다. 성폭력 피해의 기억은 살아가는 매 순간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기에 피해자의 삶 전체를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놓게 되며 심한 경우 이전처럼 생활하는 것 자체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굳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기 싫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지원책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라는 공간이 가해자와 피해자 공통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 전공의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가해자는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며 강의권을 잃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공간을 온전히 지켜나가고자 한다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그 유형이나 심각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연속선의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삶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당한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활공간에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제까지 수집된 사례에 의하면, 많은 경우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

..피해자의 생활공간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 잘 나가지 않는 등 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이전만큼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한 경우 피해자의 인간관계 경우는 아예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다. 서강대 K교수 사건의 및 경험의 폭이 협소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강의실에서 항상 뒷자리에 앉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 고, 발표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과는 달리 생이 원하는 대로 살을 할 속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수성 살아갈 수 있는 권리 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로를 박탈당하고 마는 인해 피해자의 생활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간관계 및 경험의 폭이 협소해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다.

▷ 학습권의 침해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피해는 바로 학습권의 침해다. 대학원생으로서,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당연한 권리는 바로 '공부할 권리'다.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은 좀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준비해나가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권은 단순히 원하는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 사람의 진로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수년간의 공부 끝에 작성하는 학위 논문은 단순한 졸업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결정지을, 이제까지의 학업의 총체적인 결

..피해자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중요성을 역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 중요성을 역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중요성을 역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 중요성을 역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결정할 학위논문은 가해자인 지도교수의 손에 의해 통과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라는 직위가 부여하는 권력을 이용한 협박과 회유를 통해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으려한다.

서강대 K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다른 교수가 던진 '충고'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먹고살 길이 더 이상 없을 테니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지도 교수인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서강대 K교수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처럼, 수업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수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은 그 무엇보다도 높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산업대 김교수 사건은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가해자보호'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학생들에게 언어적 성폭력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던 학교는, 가해자를 비판해온 학생들 중 무려 10인에게 수업권 방해를 이유로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의 징계를 가했다. 가해자의 교수직위는 보호해주면서 피해자의 학생자격은 너무나도 쉽게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는 결국 부당한 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은, 가해자의 수업권에 비해 훨씬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피해자의 삶을 경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위를 이용하여 절대적 악자인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계속해서 교수로 인정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지닌 삶에 대한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수직위의 박탈-해임을 통해서만이 피해자의 남은 학업이 보장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제2, 제3의 성폭력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 노동권의 침해

학습권의 침해는 결국 노동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대학원에서의 학업수행은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문제와 직결된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 그 자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의 바로 끝에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겪게 되는 직·간접적인 삶의 피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한 침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해자인 지도교수로부터의 논문지도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수년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싸운 결과 고작 학교의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3개월 정직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3개월 후면 돌아올 성폭력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하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자신의 진로를 맡겨야만 하는 것이 지금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발생한 교수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졸업 논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수년간 준비해왔던 진로 계획을 무너뜨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한 순간에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서강대 K교수 사건을 보자. 학위 논문을 목전에 두고 있던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지도교수로부터의 논문지도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수년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비록 직접적으로 논문지도를 받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울대 신교수 사건이나 동국대 김교수 사건의 피해자들의 노동권 침해는 이보다 덜하지 않다. 서울대 사건의 가해자인 신교수는 여전히 강단을 지키고 있지만, 피해자는 결국 한국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동국대 김교수 사건의 경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조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늘 한국에 입국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해자가 교수라는 직위를 보장받으며 편안히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불안정한 생활조건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수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노동권의 침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의 피해자의 현실이다.

이러한 권리들의 침해는 각기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두가 얹혀서 피해자의 삶에 복합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되려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주변인들의 2차 가해와, 서강대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학교 당국의 사건 해결에의 의지 박약이 더해져 피해자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싸운 결과 고작 학교의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3개월 정직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3개월 후면 돌아올 성폭력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하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자신의 진로를 맡겨야만 하는 것이 지금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우리가 어처구니없게 느끼 장애물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어딘가에 내 사연을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데 알아지...
학교에 학칙이라는 것은 뜯어보니 아무짝에도 쓸모 없고
몇 년동안 비싼 등록금 바치며 다녔던 학교도
나 몰라라 오리발 내민다.
나를 해꼬지한 놈이 오리발 내미는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이건....
게다가 고소라도 할려고 보니
도대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했던 말 또하고..또하고..또 하게 만든다.
도대체가....
도대체가...
어떻게 돼먹은 세상이야??
xxx.....

여자로 태어나서 먹고살기 참 힘들네....라고 느낄 때가 있다.
바로 이렇게 황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 새벽 5시가 넘도록 이 짓을 하고 있는 무사생각--+ -

【 성폭력 관련 학칙의 문제점 】

1. 실제 적용가능한 성폭력 관련 학칙의 부재

30여 개 대학의 학칙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성폭력 관련 학칙을 별도로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학교에는 성폭력 관련 학칙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학사, 교무행정 등에 포함되어 3줄로 언급되어 있는가 하면, 성폭력 관련 학칙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다.

또, 학칙이 있다 해도 규정 없이 시행세칙만 존재하는가 하면, 규정은 있고 시행세칙이 없는 등 실제 효용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처리기구, 피해자 보호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칙이 부재할 경우, 실제로 교수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1차적으로 가해자 처벌이 매우 힘들어진다. 특히 학내 징계위원들은, 아무리 학생들이 교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지라도 성폭력과 관련된 명확한 학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수'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실제 교수성폭력 사례들에서 가해자들의 최종징계결과를 보면 학교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학교측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나 시행세칙이 없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비밀 유지조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한 정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는데, '성폭력'을 형법과 관련지어 정의하는 반면, '성희롱'은 '개인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성폭력'의 개념을 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본다면 '성희롱'역시 당연히 성폭력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칙 상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을 분리함으로써 '성폭력'은 법

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다루지지만, '성희롱'이라 규정하는 사건들은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실제 발생하는 교수성폭력의 상당수는 법적 해결이 힘든 성폭력인 소위 성희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과 피해는 교수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간과되어 버리며 가해자 교수에 대해서도 면죄부의 효과를 주게 된다.

한편,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각호를 달아 판단 기준의 예시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된 내용이 빈약할 뿐 아니라 모든 사건이 명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학칙이 오히려 가해자가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접근, 성적접촉의 요구..."와 같은 사항이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예에 포함될 때에는, 교수와 제자간의 위계차이로 인한 동의 하에 발생한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간주하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3.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사건 조사과정이나 가해자 처벌수준 등 일체의 사건 처리 및 해결과정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의 심각성의 정도는 피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거나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징계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재심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 피해자의 권리 확보 및 비밀의 준수

법적 구제 혹은 의료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학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보 안내 수준의 의무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교수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해자교수의 해임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칙에 의해 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불가피하게 법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인 가해자교수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피해자학생에게는 법적 차원의 해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오히려 가해자 교수가 피해자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중의 압박을 가하는 행태가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가해자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피해자학생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의무를 학칙에 규정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한편, 학칙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피해자의 신

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밝힐 수 없게 규정해 두었으나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따른 징계나 별도의 처벌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 혹은 증인이 되는 학생 역시 자신이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대리인이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5. 성폭력 사건 처리 기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징계 발의 등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의 2/3이상이 실질적으로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수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학생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학생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성폭력대책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가 가진 가해자 처벌에 관한 능력은 징계의 심의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성폭력 사건 처리 기구가 조사를 끝낸 뒤 징계위원회에 합당한 징계를 발의했는지라도, 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사권과 징계권의 분리는 가해자 처벌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해자징계를 살펴보면 해임 혹은 3개월 이하의 정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혹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직의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교수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징계가 현실적으로 일괄적인 해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가해자를 학내에서 마주할 가능성에 완전히 노출되고 피해자의 학습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수준의 다양성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학교 당국과 교수 사회의 대응 논리】

학교 당국의 논리

피해자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많은 권리를 침해받는다. 또 앞으로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에 교수가 학교에서 사퇴하는 것을 바란다. 교수의 해임에 관한 권한은 학교측에 있기 때문에 법적 해결보다 학내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사건의 신고나 해결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기대와 달리 학교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측은 학교의 명예와 이미지를 고려하여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고 교수가 가지고 있는 학내의 권력을 생각하면 학교측은 가해자 편에 서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태도를 실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면담요청 거부-성폭력 사건이 학생기구에 접수되어 학생기구에서 학교측에 총장 면담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총장은 면담을 연기하고 취소하면서 최대한 면담요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부총장과 면담하였다.
2. 게시판 통제-학내 게시판에 사건을 알리기 위한 글이 올라올 경우 게시판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모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의 경우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3. 언론사 탄압-학내 언론사에 관련 기사를 실지 못하게 하였다.
4. 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 사건과는 무관한 질문으로 피해자를 당혹하게 하였다.
5. 조용히 처리할 것을 요구-피해자의 대리단체인 학내기구에 대외이미지를 고려하여 조용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6. 재심의 요구 묵살-적절하지 못한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징계는 끝났으니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7.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피해자는 등록을 하지 못할뿐 하였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다.
8. 학생 징계-산업대의 경우 가해자의 수업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학생 5명 제적 4명 무기정학 1명 유기정학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수업권 방해라는 징계이유와는 달리 가해자 교수에게 사과한 경우에는 징계수위가 낮추어졌고 징계 결정후 총장이 바로 휴



가해자측과 교수사회의 대응논리

교수사회는 실로 복잡하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라인이 있고 권력 차가 존재하는 데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 교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도 한다. 서울대 신교수 사건처럼 교수가 어느 정도 보직이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학교에서는 교수가 해임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교수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수사회 전반적으로(특히 남성교수들을 중심으로) 가해자 교수를 교수라는 이유 하나로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동국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수의 일이라면 그 교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발벗고 나서는 풍토 자체에 문제가 있다. 흔히 제기되는 가해자측과 교수사회의 대응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사실 부인-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았다는 등의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한다.(특히 술에 취했을 경우)
2. 권력 및 지위를 이용하여 간접 협박-교수와 학생간의 권력을 이용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학생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협박한다. 서강대의 경우 피해자가 보낸 사과요청 메일의 답메일에서 OOO양 놀랍군. 나는 그동안 교수로서 할 수 있는한 자녀의 구만리 같은 앞날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게 무슨 일 인가? 라고 하는 등 간접협박 하였다.
3. 음모론 제기-피해자의 평소 행동 등을 문제삼아 정치적인 이유 또는 자신에 대한 원한 때문에 자신을 모함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 서강대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교수의 해임에 대해 단식투쟁한 것을 두고 그 교수의 사주로인한 음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동국대의 경우 사회학과 교수들이 김교수의 편을 들며 연대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사회학자로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고 서명을 철회한 경우가 있다.

4. 애정론 제기-교수가 한 행동은 친근감의 표시이며 교수가 학생을 너무 사랑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
5. 타 교수들과 연대-동국대의 경우 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에게 연대서명을 받았다. 또 동국대 교수회 내의 교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수업거부 운동을 하는 것은 교권침해라고 반발하였다.
6. 교수는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이러한 사고가 교수 사회에 팽배해 있어 교수진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내리기가 힘들다.
7. 동정론 제기-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므로 가족을 생각하라 등의 동정심을 유발한다.
8. 별일 아니다-술에 취한 상태였을 경우 한번쯤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등 사소한 일로 치부하려고 한다.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학교와 가해자를 포함한 교수사회 전체와 싸워나가야 한다. 학교와 교수사회 모두 가해자를 감싸주는 풍토 속에서 교수의 처벌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분명 각각의 다른 사건 속에서도 학교측의 태도나 가해자측의 대응논리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교수성폭력 사건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수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왜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발제 5

【행정기관의 비 전문성】

-동국대 김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특히 사립대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의 신고나 해결 과정을 교육부나 여성부와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국대 김교수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교수를 해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성추행으로 해임까지는 너무하다며 가해교수를 복직 시켰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성부는 같은 국가 행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산업대에서 여성부에 언어 성폭력과 관련하여 신고하였을 때, 누가 보아도 분명 성폭력적 발언인 것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파악했을 때, 그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하여 사건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교육부나 여성부는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징계재심위원회의 문제점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물적 증거가 남기 힘들어서, 당시 피해자의 심리나 정황만으로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건을 피해자의 심리와는 무관하게 성추행, 혹은 성희롱이라고 단정지어 객관화 - 여기서 객관화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흔히 생각되는 과학에 있어서도 과연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객관적이라는 것, 혹은 객관화된 사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시대의 지배담론이 정의한 '사실'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생각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20세기 초에 여자의 뇌의 크기는 남자의 것보다 작아서 따라서 지능도 남자보다 떨어진다는 어처구니없는 '객관화된 사실'을 접한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쓰인 '객관화'라는 말은 남성지배 담론이 규정한 '객관화'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일 수 있고, 이미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이 '객관화'라는 말이 가진 엄청난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여 오고 있다 - 시키는 것은,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시각에 좀더 가까울 수 있는 '객관화'를 하여 보게 하도록 한다. 그러한 객관화 과정은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당해 사건의 결과마저 축소시켜 피해자의 피해를 배로 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과 같이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의 상당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재조사시 오류

그러나 재심위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에 대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재심위는 청구인인 교·직원과 피 청구인인 학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징계에 대해서 그 징계가 청구인인 교·직원에게 맞지 않았을 경우 그 수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재심위에서는 피청구인인 학교가 청구인에게 징계를 내렸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징계수위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재심위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행정 관료이거나 선생님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건과 같이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칙에도 나와있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동국대 김교수 건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하였던 징계위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선 징계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자료인 학교에서 김교수

를 해임시킨 근거들 -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전 사회학과장에 대한 과도 협박사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상으로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점,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여러 여성단체들의 견해와 피해자의 대리인들로서의 학생들의 의견 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학교에서 김교수를 해임시킨 근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 - 성폭력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가, 청구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는가 등-을 다시 하는 등, 청구인인 김교수의 변명만을 참고로 하여 비전문적인 재조사를 하였다. 결과 성폭력이 없었다고는 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것을 단순 성추행으로 말하고 있다.



• 복직 판결의 근거채택에 대한 오류

실사 재심위가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피청구인인 제출한 징계근거 문건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심위는 김교수에 대한 복직 판결의 근거로써 약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것은 김교수가 성폭력을 저지른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청구인의 화려한 경력사항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그가 성폭력을 저지른 수 있는 지 아닌지 그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근거가 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발생했다면 모두가 거짓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고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이 성폭력 사건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재심위의 복직 판결에서 그 근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이 김교수의 경력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K교수를 해임시킨 근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자료들로부터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또 한번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 재심위의 구성의 문제와 비 전문성

또한 재심위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 5~7명 중에 여성위원의 수가 2명밖에 되지 않고, 위원구성도 성폭력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만약 성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거나, 학교에서 제출한 해임근거에 속해있는 여성단체들의 의견서를 참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심위는 여성단체들의 의견이 해임 근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교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김교수를 지지하는 교수들의 의견서와 서명만을 중요시함으로써, 앞서 언급하였던 재심위의 역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위 자체도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자료를 증거로 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재심위는 사건 재 조사시 참고해야 하는 근거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 증거가 남기 힘들다는 일반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교수라는 점을 간과하였고, 그러한 점은 학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학교 안의 권력 관계 안에 있게 함으로 공론화 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그 상대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교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력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쉽다는 점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성부의 실제적 영향력의 부족

현재 여성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시정을 권고 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립기관에서 그러한 권고를 무시했을 경우 그 기관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해택을 감면하는 등의 실제적 권한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부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 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부가 교육 인적 자원부와 함께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볼 수 있는데, 만약 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교육 인적 자원부가 다루고 있다면, 교육 인적 자원부와 같이 같은 국가 행정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성부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 여성부가 실질적 도움을 주기가 힘들어지고, 그 방법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3. 총체적인 한계점

• 사립학교나 기관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회에 대한 대정부 질문(2001년 4월경에 실시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보여지듯이, 현재 사립대학교에 대해 교육부나 여성부와 같은 행정 기관은 권고 수준이외에는 전혀

손을 덜 방도가 보이지 않고, 대학행정이나 재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해당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지원금을 줄이는 정도의 징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립대학교에서 학교 재정부문에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정부로부터 얻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금 감축의 방법도 사립학교에는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학교 대해서 교육부나 여성부의 권고를 무시하면 다르게 해볼 도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 성폭력 사건과 같이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대해서 전혀 융통이 없다.

동국대 김교수 사건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 보낸 문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대학내 여성운동기구들의 의견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서 동료교수들의 탄원서는 인정하였다-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위 규정 11조 4항에 보면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국대 김교수 사건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김교수를 해임하는데 있어서 사용하였던 여러 여성단체들의 성명서나 의견서를 채종법칙의 위반이라 하여 채택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당시 김교수의 복직을 지지하였던 동료교수들의 서명만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 성폭력에 있어서 전문가인 그러한 사건들을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여성단체들이 분명한데, 그것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매맞아 죽은 원혼들이 온 나라를 해맨다.
"법도 남자더라....."



【 성폭력에 대한 법적 해결 - 그 가능성과 어려움 】

1. 성폭력 관련 규정 검토

(1) 형법32장 강간과추행의죄

(가) 형법상의 유형

- ◆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의 죄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 ◆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나)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제297조 (강간)

- 죄명: 강간 - 친고죄
- 대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 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98조 (강제추행)

- 죄명: 강제추행 - 친고죄
- 대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 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 친고죄
- 대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형: 전2조의 예에 의함

- ◆ 제300조 (미수범)

- 죄명: (제297조~제299조 각 죄명) 미수 - 친고죄

- 대상: 전 3조의 미수범
- 형: 미수범, 감형가능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하 성폭력특별법) 상의 유형

- ◆ 특수강도강간등(제5조)
- ◆ 특수강간등(제6조)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 ◆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 ◆ 13세미만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8조의2)
- ◆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 ◆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 ◆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 ◆ 카메라 등 이용촬영(제14조의2)
- ◆ 제5조 내지 제10조, 제14조의2의 범죄에 대한 미수범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 성희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등)

-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 2 제2항)

: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강제추행과 신체적 성희롱과의 구별 문제

- 강제추행은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나, 성희롱의 경우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성희롱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음

※ 형사처벌 여부

성희롱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써 형사 처벌되지 않는 사항

※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형사처벌은 가능)

-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하나로써 성희롱을 규정한 다음(제29조 제2호) 이에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0조 제2호)

2. 피해 입증의 어려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

첫 번째,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무기력과 공포상태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일단 피해 자체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성폭력 고소의 기한을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성추행의 경우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한 말하기를 두려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묻혀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기억이 되살아 나 고통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

두 번째, 성폭력을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전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많은 경우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 되기 쉽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를 요구 받게 될 때 피해자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강간 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정액이나 체모 등의 증거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조차 사건발생 직후 72시간 내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48시간 이내가 좋다) 그러나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의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증거물들을 제대로 확보해 두기가 어렵다.

세 번째, 증거 및 증인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괴로움과 부담을 안고 있

는 반면, 가해자들은 '그런 적 없다.'는 말 한마디로 시종일관 버틸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같은 가해자들의 '버티기식 작전'이 일선 수사기관에서 마치 '일관성 있는 진술'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1) 피해입증책임의 전환 필요성

성폭력 피해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부분이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소비자피해문제, 의료분쟁, 남녀차별고용문제 등에 있어서는 피고 소인이 되는 기업이나 병원 측이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법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은 '무죄추정의원칙'이며 이는 성폭력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무죄추정의원칙' 자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규정하는 성폭력의 유죄/무죄 기준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이며 이 기준 하에서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란 더욱 어렵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현행 법에서는 성폭력의 기준을 (여성의) '거부의사표시'에 두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결국 성폭력을 입증하는 책임은 여성에게 있게 되며, 그 핵심은 여성의 '저항' 여부에 놓이게 된다.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를 있었는지'에 두기보다는 '저항이 있었는지'에 두는 이같은 시각은 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화하며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맥락을 단순화시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여성이 '동의된 상태'라고 전제하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얼마나 동의를 구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2)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증거주의'의 문제점

증거불충분.

가해자들이 혐의없음으로 풀려나게 되는 근거 중의 하나다. 그러나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은 가해자들의 탈출구로 너무도 쉽게 악용되곤 한다.

애초에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소위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1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피해자 기억의 특수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세세하게 진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에서 법정에서

까지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상황을 조사관 앞에서 구술해야 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여러 번의 반복되는 조사 속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목요연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되는 부담까지 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의 경험은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기억이 정리되어 있기 보다는, 단편 단편 끊어져 있으며, 그 끊어진 기억조차 떠올리기에는 두렵고 끔찍한 경험이다.

어떤 이들은 '정말 성폭력을 당했으며, 그렇게 끔찍한 기억을 잊어버릴 리가 있나?'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아무튼, 성폭력 피해의 기억이 갖는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기성법의 체계에서 피해자들의 파편화된 기억과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은 '신뢰할 수 없는 진술'로 취급되곤 한다.

만약, 전쟁시 고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문당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구를 써서,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고문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그 때 사용한 손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몇 번이나 때렸는지를,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를, 소리는 몇 번이나 질렸는지를, 혹시라도 고문을 즐기지는 않았는지를 질문받는 것은 정당한가?

성폭력의 경험의 고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일방적인 권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로 발생한다. 그리고 그 가해는 항상 몸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조사의 외피를 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1999. 2.

경찰총장

1. 목적

서양죄 피해자 수사 및 공판 관여시 수사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수행 과정에서 성범죄로 인한 고통이외에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2.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기본자세

- 수사 및 공판관여는 엄정하게 시행하되, 성범죄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욕이나 조롱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엄정 중립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수사상 유의사항

가.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 범죄현장 또는 그 직후의 성범죄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범죄 증거의 철저한 수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
-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정액, 체모의 채취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자의 몸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조사할 것.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정신장애자인 경우와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에게 인계시까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나. 피해자 소환절차상의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소환 전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가급적 피해자의 소환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타인을 통하여 연락을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환이유 등을 함부로 고지하지 말 것.
- 부득이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봉함우편을 사용하도록 할 것.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
- 재소환에 대비, 피해자의 비밀보호에 편리한 연락장소를 조서에 기재할 것.

다. 조사 환경

-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평온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할 것.
- 조사시 참여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 피해자가 보호자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 친지 등 보조자의 입회를 허용할 것.
-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참여하에 조사할 것.

라. 조사방법

- 피해자가 정신적인 원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할 것
- 해당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격형이나 성범죄를 당할 당시의 기분, 가해자의 사정 여부 등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갈 것.
-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은 하지 말 것.
-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범행의 동기를 유발했다는 식의 추궁을 자제할 것
- 모든 조사와 신문은 분리하여 하고 가해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
-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
- 특별한 이유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중용함으로써 특정당사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

4. 공소유지상 유의사항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신청하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등 공소유지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
- 공판관여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만 신문할 것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특별한 필요없이 피해자의 성격형, 과거 경력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

※ 일선 수사관들이 대부분 이상의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지침과 반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2) 수사관에 의한 합의중용

수사관들의 가해자에 대한 동정은 가히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다. (혹시 재네 원래 형

제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

성폭력을 '별 거 아닌 일'로 보고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가해자의 인생을 먼저 걱정하면서 항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한다. 가해자가 학생이면 그의 창창한 앞길을 걱정하며, 기존 남성이면 그의 가정을 걱정하며, 교수이면 그의 학문적 업적을 배려한다.

합의 중용은 단순한 권유에 그치지 보다는 집요하고 끈질긴 설득에 가깝고 이를 매번 거절하는 피해자는 마치 자신이 '남자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독한 년'으로 비난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자신의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조사관으로부터 끊임없이 가해자의 인생을 걱정하는 말을 듣게 되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옹졸하고 악의적인 인간처럼 취급될 때 피해자는 위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이같은 압박감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된 상태로 몰아가게 되며, 피해자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4. 요약 및 제언

이상의 내용은 교수성폭력에 특수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교수성폭력의 특수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문제와 더불어 대학내에서의 교수징계규정을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정에서 어떤 징계를 받건 간에 그것이 피해자의 이후 생활권 보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판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독립된 안전한 공간을 보장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 부분의 발제에서 지적되듯이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이 피해를 학내에서 구제받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가해교수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학내에서의 해결은 더욱 어렵다. 결국 사건은 여성부나 교육부 등의 행정기관으로 신고되거나,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을 거치게 되는 편이다. 각 기관에서 갖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해자의 징계수위가 결정되며 가해자의 징계수위는 학교에서의 교수의 직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가해자의 교수직을 박탈함이 당연하나 현실에서 가해교수에 대한 해임조치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법적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처분되어야 교수직에서 해임이 된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가진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하다. (더구나 문제시된 사건의 가해교수들은 드러난 건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교수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피해자의 생존과 잠재적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가혹하다'든가 '가해자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생존권과 가해자의 생계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첨부1

수사방법과 절차 정리

(한국성폭력 상담소 법정지원모임에서 퍼왔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경찰에 수사를 명하기도 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① 고소장 접수 → 경찰수사

·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대략 1~2개월안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고소인 조사'라고 하는데 경찰관이 질문을 하고 고소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가 끝난후 고소인은 문답내용이 적혀있는 '진술조서'라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조서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고 틀린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읽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술조서는 범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고소인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가 서류이면 가급적 복사본을, 물건일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경찰은 이후 가해자(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목격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경찰수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개월 내지 3개월정도 걸립니다.

② 경찰수사 종결

경찰은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요청을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③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찰수사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다음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때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검찰수사 역시 수사기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대략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④ 검찰수사 종결 (기소 → 재판 / 불기소 → 항고, 재항고)

수사를 마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 기소

· 기소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소후 재판이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이 구공판, 구약식 재판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구공판 :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구속여부에 따라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구약식 :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약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됩니다.

◆ 불기소처분

·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피의자나 목격자 등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혐의 유·무를 밝힐 수 없으면 기소중지,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 합니다.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항고 :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을때 고소인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한 검사가 속해 있는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달라는 의사표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되면 역시 1개월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 재항고까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기 각 통지를 받고 30일안에 해야하는데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

교수 성폭력의 해결을 위한 대안

1. 학내 해결을 위한 반성폭력 학칙⁵⁾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학칙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있는 곳은 적다. 반성폭력 학칙이 학사, 교무행정 등에 포함되어 3줄짜리로 제정되어 있는가 하면, 학칙이 있다 해도 시행세칙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학생 사이의 성폭력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더라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해결하기에는 미비점이 많다.

대학 당국은 그동안 대학내 성폭력을 방지하고 외면해왔던 관행과 정책을 버리고 모든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학의 기본적인 의무라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효과적인 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 효과적인 사건 조사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수적이다.⁶⁾

이 글에서는 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중심으로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과 그 실제적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한다..

1) 성폭력의 개념 확장

미국 대학에서 sexual harassment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사회에서는 정도가 심하고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 5) 이 글은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서 2001년 3월 공청회 때 발표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 가안"과 2001년 9월 서울대에서 열린 '대학내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 I-학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상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임민희씨가 발제한 "서울대 학칙과 사건 처리 시스템 분석" 글을 참고하여 쓰여졌다.
- 6) 2001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문대학 가운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칙 또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완한 대학은 225개로 전체의 63.9%였다. 국공립대는 46개 가운데 71.7%인 33개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학칙을 제정했고 사립대는 147개 가운데 85개로 57.8%였다.
- 7) 미국의 반성폭력동맹(AASC)은 성폭력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1) 비밀의 유지 2)조사의 공정성 3)보복으로부터의 보호 4)처리의 확실함(혐의가 증명된 경우 교정과 징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을 들고 있다.

것은 성폭력이고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과 가벼운 접촉은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절적 이해를 지양하고 성폭력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성폭력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폭력은 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폭력이다. 따라서 학칙에서 명시하는 성폭력의 정의는 성적인 행위 (sexual violence)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gender violence)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①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언행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②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수,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행,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③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④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함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판단'이어야 한다. 성폭력의 판단여부와 그 심각성은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법제도적 인식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보편적이고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이지만 현 상황에서 일반의 상식이란 가부장적인 남성 주관과 다르지 않으며,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2) 실효성있는 상담소 운영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성폭력 상담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소가 실제로 성폭력을 해결하는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의지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상담소는 학내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져야 한다. 독립적인 학내기구로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담당직원의 교체나 채용의 부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든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건의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담소는 학내의 어느 요소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교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사건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의 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처 등의 산하에 상담소를 두고 있는 것은 근본적 오류이다. 또한 상담소의 상담원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여야 한다.

3) 대책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많은 대학의 학칙에는 학생과 직원은 각각 학생 관련 사안과 교직원 관련 사안에만 참

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학생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에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학생을 대등한 구성원으로 보기 보다는 위계가 있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보는 유교적 가부장주의의 일면이다. 이는 이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대학내 권력관계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바뀌어야 한다.

학칙은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 구성은 공동체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 대책위원회에는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성폭력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여성위원을 전체의 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규정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학생위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는 학교 권력 관계와 분리되어 사건을 판단하고 학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학생이고,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수사회에서 가해교수를 옹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위원의 성폭력 대책위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책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워크샵 등을 통하여 대책위원과 상담소 직원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부나 여성부에서 대책위원이나 상담소의 상담원과 직원을 교육하는 것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자문위원을 두고 대책위원과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실질적인 가해교수 징계

징계는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필요한 징계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는 대부분 무거운 처벌이고, 가해자의 의식변화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한 공개사과나 재교육 등의 조치를 징계와 함께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징계 규정은 그 절차를 보완하고, 사건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징계가 일반적 징계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폭력사건의 비밀 보호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학생 징계는 100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수회의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가해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도 상담소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피해자를 징계위에 출석시키고 다수의 교수 앞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상담소나 대책위원회의 징계 요청이 현실적으로 별다른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 내에서 상담소의 위상이 낮은 것과도 연결된다.

특히 가해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위해서는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상담소의 위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해 교수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인지 인식하고, 가해교수에게 실질적인 타격이 되지 않는 1개월에서 3개월의 정직처분 대신 가해교수가 학교를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5)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측은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사건해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산부족을 내세워 피해자의 해결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자와 대리인,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신원과 사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를 누설할 시에 처벌을 받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6) 성폭력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대응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인 규정이 없는 대학도 많으며, 반성폭력 학칙을 마련한 대학에서도 대학은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따르기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려고 한다거나,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위축된 권한 행사를 해왔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공감 없이 대학이 관료적 타성을 가지고 성폭력 문제를 대한 결과이다. 학칙을 만들어 놓고도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학칙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지 못한다면 상담소는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환영했던 지원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극복해야 할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에 귀기울이고 반성폭력 정책의 적극적 실행을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제대로 된 법적 해결을 위한 현행법의 개선⁸⁾

대다수 피해자들의 바램대로, 학내에서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진행중인 서강대 K교수 사건이나 동국대 김교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교수성폭력 사례들을 보

8) 이 부분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99 한국여성개발원) 제6장 「현행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의 강화방안」을 참고했다.

면 대학 내에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법적인 차원의 싸움으로 확대된 것이 대다수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각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안들에 미비점이 많은 만큼이나 현행법 역시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 학내를 벗어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법의 힘에 기대는 피해자들이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거들되는 재진술 요구와 조사관에 의한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중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 상 성희롱은 성폭력의 행위 유형이 아닌 남녀 차별의 문제로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있어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지닌 현행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적용 확대

- 기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한정되어있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한 성폭력 특별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계로 추행한 행위를 추행죄로 서술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업무나 고용관계에 속해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인 교수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교수의 조교가 아닌 이상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동국대 김교수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현행법상에서는 가해자가 교수직위를 이용하여 조교가 아닌 일반 대학원생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이 드러난다. 동국대 김교수 사건이나 서강대 K교수 사건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업무나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교수와 학생이라는, 분명한 위계가 존재하는 관계의 경우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 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의 문제로서만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 행위 유형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⁹⁾.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한 재교육이나 징계가 가해질 뿐, 가

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성희롱을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는 "사업

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희롱 역시 여성에 대한 분명한 폭력임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상사의 부하직원에게 대한 강간과 추행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성폭력 특별법 제11조에 성희롱을 포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3) 신뢰성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집단보다도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한다. 그만큼 교수라는 직업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신뢰 때문에 교수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갖는 가해자의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특히 자신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갖는 믿음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와 같이 신뢰와 권위를 지닌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관계를 악용한 성폭력 사건의 해악성은 그 무엇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나 교육시설의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성적으로 만족케 하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한 오스트리아의 형법이나, 피해자에게 신뢰와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가중처벌 받도록 한 캐나다 형법의 판결규정을 참고하여 이처럼 권위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4)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차단

-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계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에 의해 일선에 전달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준수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동국대 김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다른 경찰들의 쑥덕거림을 견뎌내야만 했다. 생각하기 싫은 기억을 떠올려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처해있는 피해자에게 수사관들은 2차 가해를 행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신변보호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조사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이나 검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지침이 강제력 있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여 분명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5) 편견 없는 재판을 위한 재교육

-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훌륭하게 완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성폭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편견 없는 재판이 이루어질 토대들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성폭력
반대한다